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3. 18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, 제20조,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임○우	1997. 4. 4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 (출석 의무 연속 2회 불이행)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보관기간 경과	전라북도 김제시 풍요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4. 3. 18. ~ 2024. 4. 1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김제고용센터 고혜지(Tel. 063-540-84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